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8. 29.(금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8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8.

라. 상정일자 : 2014. 8. 29.(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도시계획국장 하 명 국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(2014. 3. 24 공포, 시행) 으로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”이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변경되는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·명칭에 대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,
-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입안 권한을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건축물의 종류·명칭 조정사항(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) 반영 (안 제14조 제1항, 안 제19조의2 제1항, 안 제41조, 안 제45조 제2항, 안 제46조, 안 제47조, 안 제48조, 안 제50조, 안 제51조, 안 제52조 제1항, 안 제54조 제1항, 안 제55조제3항, 안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안 제60조 제1항)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“기본 시설 설치 제공 범위” 확대 (안 제17조의2 제1항)
- 준주거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“검사장” 입지 허용 (안 제36조 제2항 제4호)
- 자연경관지구내 “기계식 세차설비” 입지 허용 (안 제52조 제1항)
- “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입안권한”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 (안 제84조 별표 3 제1호 카목 및 타목)
- 시도시계획위원회 “제2분과위원회 심의·자문 내용의 변경”(안 제72조 제1항 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제84조 별표3 제1호에 신설하여 입안의 권한을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하는 카목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과 타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사항은 과도한 특혜에 따른 민원 등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市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총괄 검토하여 입안 및 결정을 하였던 사항임.
- 그러나,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입안의 권한을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군·구간 기준 설정 등 형평성의 문제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, 본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자연경관지구 내 기계식 세차설비를 허용할 경우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?(최석정 의원)
⇒ 관련법에 의한 여과시설을 설치해야함.
- 검사장을 준주거지역에 허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? 해당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교통혼잡 문제 등이 있는데(김금용 의원)
⇒ 12m이상의 도로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며,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 편리성은 증대되는 장점이 있음.
- GB해제 입안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?(신은호 의원)
⇒ 향후 통일된 기준을 수립·시달하여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, 최종 승인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처리할 계획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금용, 신은호, 손철운, 최석정, 이도형 의원

나. 반 대 : 황인성 의원

- GB해제 입안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반대함.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: 6명, 찬성 : 5명, 반대 : 1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. 이하 같다)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
- 마.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관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

제1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물놀이형 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)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”를 “놀이형 시설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출판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”를 “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 본문 중 “수리점, 세탁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”를 “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”로 “해당되는 시설”을 “해당되는 것”으로 하고, 같은 목 본문 외 1) 및 2) 중 “「소음·진동규제법」”을 각각 “「소음·진동관리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

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자목 중 “장의사, 동물병원, 독서실, 총포판매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”을 “독서실, 총포판매소, 장의사·동물병원·동물미용실·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차목 중 “의약품 판매소,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”를 “자동차영업소로서”로 한다.

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

마. 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종교집회장[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(祭室), 사당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
아.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
제17조의2제1항 중 “종합의료시설”을 “종합의료시설, 방송·통신시설 및 방재시설”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미만이거나”를 “미만과,”로 “미만으로”를 “미만인 경우로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차목·타목 및 과목”을 “거목, 더목 및 러목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검사장(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)

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8조제2항제4호, 제39조제2항제4호, 제40조제2항제5호 중 “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”을 각각 “교정 및 군사시설”로 한다.

제41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

제45조제2항제12호 중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”을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46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

제47조제2호 중 “나목 및 사목”을 “아목 및 너목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2호 중 “가목·나목·아목 및 차목”을 “가목·나목·아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나목 및 사목”을 “아목 및 너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3호 중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”을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50조제1호 중 “나목 및 아목·차목”을 “나목 및 아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나목 및 사목”을 “아목 및 너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”을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51조제1호 중 “가목·바목·사목 및 아목·차목”을 “가목·바목·사목 및 아목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제1호거목 중 “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는 제외한다)”를 “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러목 중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”을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54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정육점 및 세탁소의 경우 20미터 미만”을 “20미터 미만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조업소”를 “제조업소(식품제조가공업 제외)”로 하며, 같은 호 타목 중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”을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55조제3항제6호나목 중 “바목부터 자목까지”를 “바목부터 아목까지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공작물”을 “공작물(가설건축물 포함)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6호,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”을 각각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60조제1항제12호 중 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”을 “자원순환 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7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2분과위원회 :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

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
별표 3의 사무명란의 제1호 가목 (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2)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공간시설 중 광장(중로: 20미터 이하에 연결되는 광장), 도시공원【소공원·어린이공원(폐지는 제외), 근린공원·묘지공원·체육공원의 변경[면적 증가 또는 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감소(감소되는 면적이 1,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)], 역사공원·문화공원·수변공원·「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」가 정하는 공원의 변경(면적증가 또는 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감소)】, 녹지 [면적증가 또는 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감소(감소되는 면적이 1,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)], 공공공지

별표 3의 제1호 차목 다음에 카목 및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	법 제38조
타. 개발제한구역(집단취락, 소규모 단절토지, 경계선 관통대지)의 해제	법 제38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·공작물) ① 영 제41조제 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·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 1종 근린생활시설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것</p> <p>가. 수퍼마켓과 <u>일용품(식품·잡화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류 등)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(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. 이하 같다) 안에서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</u></p> <p>나. ~ 라. (생 략)</p> <p>마. <u>마을회관· 마을공동작업소·마을공동구판장·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바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</u>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</p>	<p>제14조(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·공작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<u>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(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. 이하 같다)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</u></p> <p>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것</u></p> <p>3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</u></p> <p>바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</p> <p>사. 제조업소, 수리점, 세탁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,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</p> <p>1)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</p> <p>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·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</p> <p>아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</p>	<p>바. ----- ----- 출 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----- ----- -----</p> <p>사. -----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----- ----- ----- 해당되는 것</p> <p>1) ----- -----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----- -----</p> <p>2) ----- -----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----- ----- -----</p> <p>아.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그 밖에 이와 비슷</p>

현행	개정안
<p>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기반시설 중 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)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폐기물처리시설, 연구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<u>종합의료시설</u>을 말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종합의료시설, 방송·통신시설 및 방재시설</u> -----</p>
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9조의2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)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<u>미만이거나</u>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<u>미만으로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<u>차목·타목 및 과목</u>의 시설은 제외한다)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의2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) ① ----- ----- ----- <u>미만과,</u> ----- ----- <u>미만인 경우로서</u>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거목, 더목 및 러목</u> 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<u>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</u>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41조(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전용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휴게음식점·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u></p> <p>다. (생략)</p> <p>3. ~ 9. (생략)</p> <p>제45조(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><u>교정 및 군사시설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1조(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</u>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5조(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</u></p> <p>13. ~14. (생략)</p> <p>제46조(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. (생략)</p> <p>나. <u>휴게음식점·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u></p> <p>3. ~ 13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</p> <p>13. ~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6조(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음료·차(茶)·음식·빵·떡·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</u></p> <p>3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7조(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<u>나목</u> 및 <u>사목</u>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</p>	<p>제47조(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아목</u></p> <p><u>및 너목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)</p> <p>3. ~ 13. (생 략)</p> <p>제48조(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<u>가목·나목·아목</u> 및 <u>차목</u>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<u>나목</u> 및 <u>사목</u>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)</p> <p>4. ~ 12. (생 략)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</u></p> <p>14. ~ 16. (생 략)</p> <p>제50조(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농림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<u>나목</u> 및 <u>아목·차목</u>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<u>나목</u></p>	<p>-----</p> <p>3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8조(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가목·나목·아목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<u>아목</u> 및 <u>너목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4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</p> <p>14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0조(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나목</u> 및 <u>아목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아목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·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</p> <p>3. ~ 8. (생략)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</u></p> <p>10. ~ 13. (생략)</p> <p>제51조(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<u>가목·바목·사목 및 아목·차목</u>에 해당하는 것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52조(건축제한 등)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자연경관지구</p> <p>가. ~ 하. (생략)</p> <p>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. 다만, <u>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제외한다)</u> 및 석유판매소, 액화가스취급소·판매소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.</p> <p>너. ~ 더. (생략)</p> <p>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</p>	<p>및 너목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</p> <p>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</p> <p>10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1조(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가목</u></p> <p><u>·바목·사목 및 아목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2조(건축제한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</p> <p>거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너. ~ 더. (현행과 같음)</p> <p>러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<u>바목</u>부터 <u>자목</u>까지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	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- <u>바목</u></p> <p><u>부터</u> <u>아목</u>까지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6조(건축물의 부수시설 등) ① 「건축법」 제46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되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<u>공작물·담장·계단·주차장·화단</u>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6조(건축물의 부수시설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공작물(가설건축물 포함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9조(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</u></p> <p>14. ~ 16. (생략)</p> <p>②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</p>	<p>제59조(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-----</p> <p>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</p> <p>14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</u></p> <p>17. ~ 18. (생략)</p> <p>③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향만시설보 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</u></p> <p>17. ~ 19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----- 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</p> <p>17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----- 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</p> <p>17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0조(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) 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</u>(군지역에 한한다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0조(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2조(분과위원회)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72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제2분과위원회 :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,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2. 제2분과위원회 :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